

① 본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분

- * **<특정활동 (6개월·취업가)> 또는 <특정활동 (6개월·취업불가)>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.**
 - ※ <특정활동 (6개월·취업가)>은 종전과 같은 직무(주)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 한합니다.
(주)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<종전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업무 (기능실습으로 종사한 직종·작업이 속함) <이행대상직종·작업일람>의 각 표 내에 있는 직종·작업 (<7 기타> 제외) >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 (8월 12일 추가)
 - ※ <특정활동(6개월·취업불가)> 또는 <단기체류> 등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계신 분이더라도 일본에서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 (주28시간 이내)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. (12월 1일 추가)
 - ※ **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지속되는 경우, 갱신할 수 있습니다.**

② 기능검정 등 시험을 보지 못해 다음 단계(기능실습)으로 올라가지 못한 분

- * 수험·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**<특정활동(4개월·취업가)>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.**
 - ※ 종전과 같은 수용기관 또는 업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 한합니다.

③ 실습처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기능실습 지속 (주) 이 곤란한 분 (새로운 실습처를 찾지 못한 경우)

- * **특정기능외국인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를 희망하는 등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정산업분야 (간병, 농업 등 14개분야) 로 취업이 인정되는 <특정활동 (최대 1년·취업가)>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** (주)예정된 기능실습을 수료한 기능실습생으로 본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분도 대상이 됩니다. (9월 7일 추가) ※ **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지속되는 경우, 갱신할 수 있습니다.**

【이하는 기능실습2호를 수료하신 분에 대한 안내입니다.】

④ <특정기능 1호>로 가기 위한 준비가 덜 되신 분

- * **이행 준비 기간 동안 <특정활동(4개월·취업가)>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.**
 - ※ <기능실습 3호>를 수료하신 분도 대상이 됩니다.
 - ※ 이미 이행 준비를 마치신 분은 <특정기능 1호>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.
http://www.moj.go.jp/nyuukokukanri/kouhou/nyuukokukanri07_00197.html

⑤ <기능실습 3호>로 이행을 희망하시는 분

- * **우량 감리단체 및 실습실시자 산하에서는 <기능실습 3호>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.**
http://www.moj.go.jp/nyuukokukanri/kouhou/nyuukokukanri07_00146.html